



韓國의 圖書館發展을 위한 國家政策에 관한 研究(要約)

李鳳順・具滋榮(梨大圖書館學科)

金孝貞・任明淳(中大圖書館學科)

編輯者註：

우리 나라의 圖書館事業은 本協會가 實質的으로 創立되어 活動하기 시작한 1956年부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동안 모든 分野의 變化 및 發展과 더불어 우리 圖書館도 刮目할 만큼 改善되고 發展되었다. 특히 最近에 이르러서는 近代化的 促進으로 말미암아 情報產業社會가 되어 圖書館奉仕의 諸요성은 날로 增大되고 있다.

이에 對處하기 위한 圖書館運營技法이 先進外國의 경우 놀라우리만큼 現代化되었고,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의 現實에 맞는 圖書館發展을 도모키 위하여 努力를 기울이고 있다. 이제 우리 圖書館界도 草創期의 發展 단계를 빗어난 時點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앞으로 全體圖書館發展方向이 提示되고, 이에 의하여 계획적인 도서관 발전을 推進할 諸요성이 振頭되어 本協會에서는 이 問題를 이미 지난 1975年부터 檢討하기 시작하였고, 1978年에는 이를 具體化시켜 긴 眼目에 선 圖書館發展計劃書를 作成기로 하여 그 基礎資料를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이 研究論文은 이러한 위치에서 1978年 本協會가 李鳳順副會長에게 의뢰하여 完成된 것이다. 李鳳順 부회장은 협회의 의뢰를 받고 具滋榮(梨大教授), 金孝貞(中大教授), 任明淳(中大教授) 등 研究팀을 구성하여 아산사회복지사업체 단의 研究비를 받아 進行하게 되었다.

이 論文은 이미 광장 20주년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기념논문집(1979)에 發表된 것으로 199面에 달하는 長篇의 研究論文이다. 이번에 本 월보에 이를 要約하여 介解하는 것은 圖書館發展策에 관한 貢重한 研究資料를 널리 알림으로써 앞으로 確定될 우리 나라 圖書館發展計劃書 作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理想的이고 바람직한 훌륭한 韓國圖書館發展計劃書가 作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積極적인 參與와 참여를 바라며, 새로운 意見이나 資料가 있으면 다수 提案하여 주시기 바란다.

I. 序論

(1) 圖書館의 定義

圖書館은 過去와 現在를 막론하고 人類文化에 이바지하는 모든 知識情報 to 수집하여 보다 科學的의 方法으로 組織整理하고 保管하여 利用者의 要求에 응하고 보다 細緻하고 效果의이며 創造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奉仕하는 機關이다.

(2) 圖書館의 構成

圖書館을 社會・文化・教育・產業 등 여러 면에서 知

識情報 提供源으로 보고, 圖書館이 具備する 機能을發揮할 수 있도록 하는 構成要素는 아래와 같다.

- ① 資料 ② 施設 ③ 職員 ④ 利用者
- (3) 圖書館의 機能

圖書館의 機能은 대체로 行政機能과 奉仕機能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行政機能은 特定한 圖書館의 目的이나 目標를 實踐에 옮기는 데 수반되는 모든 行政의 業務를 들 수 있다. 奉仕機能은 知識情報を 보다 細緻하게 著集整理하고 이 資料를 利用者에게 紹介하고 提供하는 業務를 말한다. 著集・整理 과정은 간접奉仕하고 利用者에게 奉仕하는 과정은 直接奉仕 또는 讀者奉仕라 한다.

II. 韓國圖書館의 歷史的 背景

우리나라는 歷史的으로 볼 때 긴 세월을 내려오면서 文化的인 風土가 圖書館을 위한 좋은 與件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13世紀에 벌써 남보다 앞서 金屬活字를 발명하여 出版業이 발달하였고, 따라서 書籍의 生產保存 및 利用에 대한 關心度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王室文庫, 寺院文庫, 教育文庫, 官營文庫 및 私設文庫 등 각종 文庫가 있어서 우리나라 圖書館의 基礎가 되었다고 본다. 圖書館이 最初의 記錄으로 나타난 高句麗時代부터 시작하여 統一新羅, 高麗, 朝鮮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9世紀 後半에 와서 現代의 圖書館이 소개되던 時期와 2次大戰 이후에 本格的의 發展을 위한 기반을 잡고 미래를 위하여 발돋움을 하는 1970年代까지 다루었다.

III. 圖書館 政策의 必要性

現代는 情報社會化하는 과정에서 知識情報의 健全은 認定하면서도 圖書館은 自然發生的인 양 無關心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 章에서는 圖書館政策의 必要性을 論함에 있어 우선 圖書館發展과 圖書館政策을 다루고 다음에 圖書館資源과 國家發展 그리고 圖書館政策의 問題點을 다루었다.

N. 本論 : 圖書館의 發展方向

(1) 國家圖書館

國家圖書館의 歷史的인 背景 發達過程 및 그 機能을 다루고 外國의 代表의in 國家圖書館을 例示한 후 우리나라 國家圖書館의 문체를 다루었다. 우선 國立中央圖書館을 紹介하고 다음에 國會圖書館을 다루었다. 우리나라의 實情은 現在 두개의 圖書館이 다같이 國家圖書館의 役割을 하여 서로 중복을 피할길이 없고, 따라서豫算의 낭비를 막을 길이 없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두 圖書館의 機能을 比較해 가면서 重複된 部分을 指摘하고 동시에 앞으로 바람직한 國家圖書館發展의 길을 摸索해 보았다. 그리고 國家圖書館發展計劃을 위한 調査와 研究를 위한 委員會(國家의in 次元)에서 組織의 必要性을 促求하였다.

(2) 公共圖書館

公共圖書館은 知的 資源의 寶庫이며 國民精神資源의 요람으로 大衆의 教育에 奉仕하여 國民資質의 向上과 社會開發 및 國家繁榮의 原動力으로 보아서 강력한 政策을樹立하고, 이를 推進하여 國家發展의 基本要素로 삼아야 한다. 우선 ① 公共圖書館의 歷史的 背景을 細分하여 살펴 다음 ② 現代的 公共圖書館으로의 轉換과 그 機能을 英國 및 美國의 例를 들고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公共圖書館의 役割을 다루었다. 그리고 ③ 韓國 公共圖書館의 現況과 그 問題點을 分析하고, 마지막으로 ④ 韓國公共圖書館의 發展方向을 提示하였다.

(3) 大學圖書館

大學圖書館의 歷史的 背景 및 그 機能을 論한 다음 大學圖書館이 附屬施設이 아닌 學事의 一環로서 취급되어야 하고 그 尺度가 되는 基準을 참작하여 ① 資料 ② 職員 ③ 施設 ④ 奉仕 ⑤ 管理 經營 ⑥ 財政의順으로 다루었다. 끝으로 ⑦ 展望에서는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새로운 發展을 위하여 ⑧ 大學校當局이나 教授들의 圖書館에 대한 理解와 關心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提言 ⑨ 行政力 補強을 위한 提言 ⑩ 大學生들의 圖書館利用訓練을 위한 提言 ⑪ 國內外 大學校 간의 相互協力を 위한 提言 등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4) 學校圖書館

—教育資料源으로서의 그 問題와 改革—

現代敎育의 理念은 新로운 社會變化에 責任 있고 융통성 있게 對處하는 人間形成에 있다. 人間敎育의 方法은 어떤 事實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方法을 訓練하는 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學校圖書館은 學校施設이기 이전에 敎育 Program의 한 分野로서 學校敎育活動의 源泉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① 敎育思想의 變遷

과 SMP (School Media Program)의 形成이란 題目下에서 歷代敎育의 變遷과 實際, 그리고 敎授理論과 SMP의 生成을 論하고 ② 學校圖書館의 現況과 그 當面課題에서는 ③ 學校敎育과 學校圖書館 · ④ 學校圖書館의 現況 ⑤ 學校圖書館의 當面課題 ⑥ 資料의 多樣化와 書誌作業 ⑦ 行政的 支援과 體系化 ⑧ 協同體制의 確立을 다루었다.

(5) 特殊圖書館

오늘의 特殊圖書館은 두 가지 意味로 存在하는 데 넓은 의미로는 각종 圖書館의 專門書籍을 소장하는一般的의 意味의 專門圖書館을 말하고, 좁은 意味로는 政府 · 企業 및 產業分野에 附設된 圖書館으로서 專門의 情報提供 및 奉仕를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特殊圖書館의 特징은 特定한 顧客의 情報要求를 充足시켜 주기 위한 努力에서 由來되었고, 그 特징적인 機能은 바쁜 特殊情報奉仕라 할 수 있다. 우선 ① 特殊圖書館의 特徵을 설명하고 ② 特殊圖書館의 발전 ③ 國內現況 그리고 ④ 國內特殊圖書館의 發展方向을 다루었다.

(6) 司書敎育

2000年代를 志向하는 韓國은 專門司書의 敎育方向 定立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事實을前提로 韓國圖書館學敎育問題를 論하였다. 먼저 ① 專門職化의 趨移를 살펴 보고 ② 專門職을 위한 韓國의 敎育現況을 다루고 ③ 專門職을 위한 一摸索에서 韓國圖書館學敎育의 展望을 다섯 가지 側面에서 밝혔다. ④ 韓國現實과 圖書館學의 接近 ⑤ 專門職에서의 職位設定 ⑥ Curriculum의 再整備 ⑦ 圖書館學敎育制度의 標準화 ⑧ 圖書館敎育을 위한 組織體의 活動.

(7) 韓國圖書館法

韓國의 圖書館法은 1963年 10月 28日 法律 第1424號로서 公布되었다. 그리고 1965年 3月 26日 圖書館法施行令이 大統領令 第2086號로 公布되었다. 圖書館法은 圖書館發展에 寄與하고 圖書館政策을 세우는데 基本이 되므로 그 改正이 시급한 입장에 있다. 現行 圖書館法은 制定公布 당시부터 問題點을 內包한 채 이루어졌기 때문에 全面改正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서 ① 圖書館法의 構成에서는 現行法을 章別로 소개하고, ② 圖書館法의 問題點에서는 章別로 그 矛盾點을 指摘하고 改正法案의 必要性을 強調하였다.

(8)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圖書館協會는 圖書館 및 圖書館人들의 聯合體로서 圖書館 發展 및 圖書館人 權益擁護에 앞장서고 社會敎育 및 文化向上에 이바지하는 役割을 맡는 機關이다. 그러므로 圖書館의 發展이 國家發展과 直結이 된

다는 것을 國家와 社會에 認識시키는데 主役을 맡고 있다. 그러므로 韓國圖書館協會가 결어 온 歷史를 더듬어 보고 現況을 살펴보는 同時に 앞으로 發展하기 위한 展望을 다음과 같이 ① 財政의 自立 ② 會員增加運動 ③ 韓國圖書館發展計劃樹立 ④ 韓國圖書館法改正案 마련 ⑤ 部會와 專門委員會活動 ⑥ 全國圖書館大會 그리고 ⑦ Standard Committe 構成을 提案하였다.

(9) 圖書館相互協力 —— 專統的 協力活動(Library Cooperation)과 圖書館組織網(Library Networks)

20世紀에 들어오면서 加速의 增產되는 知識에 관한 적절한 統率 및 多樣한 情報要求의 急增 그리고 相對의으로 貧弱해지는 財政의 货困으로 인하여 많은 圖書館은 自給自足의 근거를 점차喪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形態의 圖書館도 훌로孤立할 수 없으므로 圖書館 간의相互協力 方案을 摸索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① 概念과 目的 ② 發展의 樣相을 소개하고 ③ 特殊事例에서는 既存하는 協力體를 例示하고 ④ 協力活動 評價 ⑤ 國內圖書館相互協力의 方向에서는 ⑥ 協力의 必要性 ⑥ 國家圖書館組織網의 構想 ⑦ 中央集中式 書誌情報體制 ⑧ 國家連續刊行物體制 ⑨ 小規模協同體制를 細分하여 論하였다.

V. 結論 및 提言

圖書館政策이 國家政策으로 採擇되기 위해서 國家가 知識情報를 國家의 資源으로 認定하는 順序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既定事實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情報의 供給源인 圖書館이 國家政策과 直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一國의 圖書館政策은 그 나라 나름의 圖書館觀(圖書館哲學)의 定立이 必要하다. 現代의 圖書館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行政當局이나 教育委員會 또는 一般國民의 圖書館에 대한 再認識 및 理解가 앞서야 한다. 우리 社會는 지금까지 圖書館에 대한 認識이나 理解가 全無한 狀態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國家의 圖書館政策이 早速히 마련되어 計劃의 統一性, 整備의 推進 그리고 相互協力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行政府에서는 圖書館擔當部署가 있어서 組織을 통한 圖書館發展을 計劃하여야 하고 全國의 次元에서 圖書館審議委員會를 두어 計劃 및 方向을 提示할 필요가 있다.

結論에서 本論에서 다룬 각종 圖書館分野의 내용을 요약하고 나아가서는 圖書館政策을樹立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提言하였다.

● 80年度 會費納入 案內

會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協助와 聲援에 대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協會는 會員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後援과 積極적인 參與로써 꾸준히 發展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自立財政의 確保라는 基本의 問題가 아직껏 解決되지 않은 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能動의이고 활발한 事業의 展開와 會員을 위한 權益擁護의 터전을 積極 마련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實情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協會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너나 할 것 없이 會員 모두가 몹시 걱정해 오고 있으며 그 打開策에 대하여서 누누히 論議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解決策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와 關聯하여 現在 協會의 唯一한 財源으로 되어 있는 會員負擔金인 1980年度 會費를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協會가 제 機能을發揮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于先 最少의 財政自立만이라도 確保되어야 하겠습니다. 團體會員이나 個人會員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協會의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團體會費 : A 급	年	120,000원
B 급	"	80,000원
C 급	"	50,000원
D 급	"	20,000원
E 급	"	10,000원
個人會費 :	年	4,000원